

13 ~~朝鮮市街地計劃~~ (南)係法規集
朝鮮市街地計劃 관련 법규
(조선 시가지 계획 관련 법규 집)

1945년에 출판한 도시 계획 관련 법령집
이로써 책의 크기는 130mm x 8.5cm 528쪽이다
수록된 법령은 ① 조선 시가지 계획령 문
록하여 ② 조선 토지 개량령 ③ 지세령 (地
稅令) ④ 토지 수용령 ⑤ 행정 집행령 및
⑥ 조선 보훈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등
6개의 법과 이들을 6개 법의 시행규칙

續

(지국의 대통령 임 또는 각령) 과 • 기상 참 고 또

• 목욕탕 영안 ^{취체} ^(인물) 취체 ^{취체} 취체

• 은사점 영업 취체 취체 • 창기 (唱妓) 취체

취체 • 원동기 (原動機) 취체 취체 • 인화기

물 취체 취체 • 농도 화기류 취체 취체 • 묘리

화장 장 맛 화장 취체 취체 • 사람 병원 취체

취체 • 도산장 취체 • 도산 취체 취체 • 정

찬범 취범 취체 등 20개의 취체가 수록되

어 있다

~~조선~~ ¹⁹²⁰ 김집 시대 ② 최고 통치 기관인 조선

총독부는 대만총독부와는 그 격이 달랐
 다. 첫째 조선총독은 천황(天皇)의 직속이
 었다. 내각총리 대신 말에 잇는 대신(大臣 =
 장관)보다 격이 위였다. 둘째 조선총독은
 육군대장으로 보하고 대만총독은 해군
 장으로 임명했다. 셋째 조선총독에게
 는 제령권(制令權) 즉 입법권을 부여했
 으나 대만총독에게는 입법권을 주지
 않았다.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예산편
 성권을 주었는데 대만총독은 예산편

심권도 있었지만 때로는 조선 총독부의 국
 장은 일본서 대신(장관)을 지낸 사람도
 있었는데 하마 대부분 일본이 현지사
 (農知事 = 우치의 지사)를 지낸 사람들이었다
 조선 총독은 스스로 법률 제정 권한이
 있었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많은 법률
 제정했는데 그 명칭은령(令)으로 표현했
 다 조선 법률령 조선 하천령 조선 시가지
 계획령 토지 수용령 또는 조선 민사령 조
 선 형사령 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

이 부분의 제정하는 법에는 법(法) 자를 빼치
 고 조선의 총독이 만든 법은 이를 령(令)이라
 한다.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문들은
 <조선총독령 반동> 하는 식으로 보도해
 왔다.

조선시가지 제화령(조선제화법)은 1934
 년에 제정했는데 이는 북조선의 라진
 (羅津) 거점의 간점성 때문에 만든 법이
 라 해는 리나친 마당이 아니라 이 법이
~~제정~~ 처음 제정된 조선의 나진이었고

서 목은 2번다 2번후인 1936년 부터
 도시 계획 법이 적용 되었으며 이 법에 대
 국 북산 평양 함흥 등 주요 도청 소재
 지는 1937년 부터 이 ^법이 적용 되었으며
 이 법은 지금의 도시 계획 법과 건축 법 등
 관련 법이 있고 ~~이 법에 포함되는~~ 도시 계획 위원회를 두는
 등 상임회 민주적인 법이 되었으며 향후 있다
 그러나 이 법은 해방이 후 ~~1942년~~ ^{계속 사용해 오다}
 1962년 혁명 정부에 의해 원래 법령 정비 때
 무효가 되며 도시 계획 법으로 바뀌었다

No.